

건설공사(상수도분야)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

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에서 발주(인·허가)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에 따라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
2024년 1월 26일

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장

1. 근거법령

- 가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- 나.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
- 다.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(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)(국토교통부 고시)

2. 공고명 : 건설공사(상수도분야)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

3. 안전점검 수행 대상

- 가.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
- 나. 건설공사 안전점검(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)

4. 참가자격 조건

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토목분야(수리시설) 또는 종합분야 등록된 업체
- 나. 서울·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(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)

5. 금액별 지역제한 및 등록명부 작성

가. 소재지에 따라 A, B 2개로 나누어 등록명부 작성

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 추정 가격에 따라 A, B 명부 중 하나의 등록명부 중에서 수행기관 지정 공고 및 지정

A. 경기도 소재 업체(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시 적용)

B. 서울·경기도 소재 업체(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 적용)

6. 모집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4. 1. 26.(금) 09:00 ~ 2. 15.(목) 18:00까지

나. 제출장소 : 군포시 수리산로 151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(2층)

다. 등록명부 공개 : 2024. 2월 중

(군포시청 홈페이지 www.gunpo.go.kr-열린시정-고시공고)

※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라. 접수 방법

1) 우편(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· 접수 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, 접수 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2) 방문접수(대리 접수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첨부)

마. 제출서류

1)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[별지 7호 서식]

2)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[별지 8호 서식]

3)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.

4)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.

5)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

6) USB 1식.(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)

7. 기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고 향후 지정 결정이 취소될

수 있습니다.

- 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참가 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등록명부에 작성하며,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시행합니다.
- 다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명부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1년간입니다.
- 라. 등록명부는 군포시 인·허가부서 및 상수도분야 사업(담당)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·적용됩니다.
- 마. 향후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(☎031-390-32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.
2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 끝.

[붙임 1]

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7호서식]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공고마감후 1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

신청인	상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성별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
신청분야	토목분야 [] 건축분야 [] 종합분야 []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조제1항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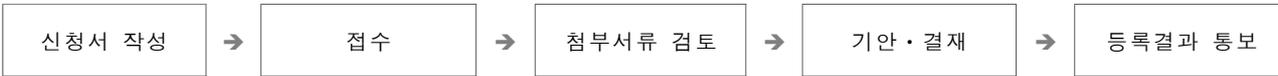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발주청 (인·허가기관의 장)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.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(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)

[붙임 2]

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[별지 제8호서식]

(3쪽 중 제1쪽)
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

전문분야(세부분야)		()		등록번호					
상호 또는 법인명				성명 (대표자)					
소속 국가명				등록일					
사무실	소재지	(전화)		확보 구분					
	순사무실 면적	㎡		입주 연월일					
자본금 (필요시)	납입자본금		변경 연월일		실질자본금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액 • 외국인 투자율 • 외국인 투자금액 								
장비 보유 현황									
취득일	품명	규격	수량	처분일	취득일	품명	규격	수량	처분일
상훈(필요시)									
연월일	종류	상훈기관	공적 내용	용역명(필요시)	비고				
제재									
연월일	종류	제재기관	사유 및 기간	용역명(필요시)	비고				

기술인 현황

등재 연월일	기술인 수			변경 내용	기록자
	계	특급	고급 이하		

